

영세사업자 국세 신용카드 납부수수료 50% 인하

(해당 실:세제실 , 과:조세법령운용팀, 담당자:박해용, 전화번호 044-215-4152)

I. 추진 배경

- 신용카드로 국세를 납부할 때 수익자 부담 원칙에 따라 납세자가 수수료를 부담중이나 민생경제의 어려움을 감안, 수수료율 인하 필요
 - 국세 신용카드 납부에 따른 수수료는 자금여력이 부족한 영세사업자와 소상공인에게 부담이 크며, 수수료 부담은 경영 부담을 가중
 - * 국세 신용카드 납부 비중('24년): 개인(85.7%), 법인(14.3%)
 - 반면, 신용카드사는 현행 수수료체계에서도 신용카드 납부대행에 따른 손실이 발생하여 납부수수료 인하는 어렵다는 입장
- ⇒ 민생경제 지원과 카드사의 손실 완화를 위한 절충안 마련 필요

II. 정책 내용

- 3단계 차등* 인하로 전 카드사 합의, 납부대행 수수료율 인하('25.12.)
 - * 영세사업자 50% 인하, 일반사업자 0.1%p인하, 대규모사업자 인하 제외
- 소상공인 지원을 위해 영세사업자의 수수료율은 대폭 인하하고 카드사의 재정부담을 감안하여 대규모사업자는 인하 제외
- 국세청·금융결제원·카드사 간 사업자 정보 전달* 관련 시스템 정비 협의를 적극 지원, 금년 내('25.12.) 시스템 정비 완료 합의
 - * 사업자별 수수료 차등 인하에 따른 영세·일반·대규모 사업장 구분 정보 전달 방식

III. 성과 및 기대효과

- 납세자 부담 경감으로 민생경제 회복 및 서민생활 안정에 기여

< 국세 카드납부 수수료율 >

구분 (단위: %)	영세(466만명) ¹⁾		일반(1,882만명)		대규모(3만명) ²⁾	
	현행	개정	현행	개정	현행	개정
신용카드	0.8	0.4	0.8	0.7	0.8	-
체크카드	0.5	0.15	0.5	0.4	0.5	-

1) 영세납세자(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 및 종합소득세 추계·간편장부 신고자)

2) 대규모 납세자(연매출 1천억원 이상)